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2999호
----------	--------

제출년월일 2022. 8. 18.
제출자 김포시장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2년 08월 1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사항(제명, 조항, 용어 등) 불일치 규정을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합성 제고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사항(제명, 조항, 용어 등) 불일치 정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제명, 조항 등의 개정으로 불·부합하거나, 자치법규 내 불일치한 인용 사항이 있는 4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오류사항을 확인·정정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집행이나 이해에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